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1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2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스포츠클럽법」 제정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라,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, 다동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증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다동이 적용 범위 수정(조례 안 제11조)

나. 「스포츠클럽법」 제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및 등록스포츠클럽의
감면 신설(조례 안 제11조)

다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른 규정 반영(조례 안 제11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2) 「스포츠클럽법」

3)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4. 1. 18. ~ 2. 7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바목 중 “**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**”를 “**소지자**”로 한다.

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: 「스포츠클럽법」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행사·강습·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제11조제1항제4호(중전의 제3호)가목 중 “**통합체육회**”를 “**대한체육회 및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**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**대한장애인체육회**”를 “**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**”로 하며,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스포츠클럽법」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된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·강습·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)</p> <p>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 감면, 이 경우 감면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마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<u>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사. ~ 파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3.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<u>통합체육회</u>가 주관하는 행사</p>	<p>제11조(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----- -- <u>소지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사. ~ 파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</u> : 「<u>스포츠클럽법</u>」 제6조에 따라 <u>구청장에게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행사·강습·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</u></p> <p>4. ----- 가. ----- ----- <u>대한체육회 및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</u>-----</p>

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
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
주관하는 행사

다. 삭 제

라.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9조
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
스포츠클럽이 공익 목적의
행사를 주최·주관 또는 생
활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
는 경우

<신 설>

4. (생 략)

② ~ ⑦ (생 략)

나. -----
----- 대한장애인체육회 및
지방장애인체육회-----

<삭 제>

마. 「스포츠클럽법」 제6조에
따라 구청장에게 등록된 지
정스포츠클럽이 행사·강습·
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
경우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체육진흥과 한윤선
연 락 처	02-3153-9856